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5(月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-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-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「주차장법시행령」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내용 변경 및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□ 主要内容

○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 별표2중 시설물 2, 3, 4, 5번 항목과 설치기준 4, 5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함.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	(현행과 같음)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(현행과 같음)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시설면적 50㎡초과 150㎡이하는 1대, 시설면적 150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20㎡당 1대를 더한 대수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시설면적 90㎡당 1대 다만,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,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 별표2중 시설물 2, 3, 4, 5번 항목과 설치기준 4, 5번 항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,
- 구체적으로는,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2중 시설물 2,3,4,5번 항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며, 본 조례안의 별표2의 설치기준 4, 5번 항목은 변경 전보다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

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설치기준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
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